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90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시민 독서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정보 접근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강서도서관 분관을 설치('25.3월 예정)하고, 그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강서도서관 분관 명칭 및 소재지 조항 신설(안 제38조 및 [별표 7])
- 분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가양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길 22 (가양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6]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 2) 「도서관법」 제4조, 제29조
 - 3) 「건축법」 제22조
 -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 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제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나. 예산조치

- 1)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 다. 협 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 라. 기 타
 -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1]
 - 2) 입법예고(2024.9.5.~ 2024.9.25.) 결과: 의견없음
 - 3) 교육규제심사: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별첨 3]
 - 5) 성별영향평가: 제외통보 확인서 [별첨 4]
 - 6)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별첨 5]

【별첨 1】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분관) 도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강서도서관 분관이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도서관 분관의 명칭ㆍ위치(안 제38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가양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길 22 (가양동)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8조(분관) 도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u><신 설></u>	[별표7] 도서관 분관의 명칭·위치(제38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도서관 가양관 55길 22 (가양동)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기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최두환(02-2282-8643)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	장학사	황은영	
입안주관부서	행정관리담당관	통보일	2024. 9. 6.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안 제38조 안 [별표7]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 (를 」 제30조부터 행정기관의 행정 규정」 제7조부터 에 따라 서울특 구와 직속기관의 대강을 규정함을 분관 설치 및 그 용으로 함 너규 정비를 통해 는 것이므로 부패	"원안동의"	

【별첨 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4A서울교육022				
정 책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최두환	전화번호	02-2282-8643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2024년 09월 05일				
제출일자	2024년 09월 03년				
완료(제외)	2024년 09월 06일				
통보일자	20210 07 0	<u> </u>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9월 06일

【별첨 5】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최두환 (02-2282-8643)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마한얼(위원장), 김상일, 이민				철, 이정현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신설> 제38조 [별표7]	명칭 (서울특별시교육 울특별시 강서구 양천 됨.	- 본 개정안은 제38조 및 [별표7]에 따른 강서도서관 분관 명칭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가양관) 및 소재지 (서 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길 22) 조항 신설을 위해 마련 됨. - 이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별첨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43호]

- 제30조(보조기관)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 · 운영하는 도서관
 -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

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 운영할 수 있다.

건축법

[법률 제20424호]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601호]

-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871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직속기관)**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설치)

-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 제36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7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2. 삭제<2011.1.13>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 6.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